

『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김 용 학

나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개정(안 제10조제2항)
-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(안 제25조의2)
-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(안 제31조의2)
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(안 제34조의2)
-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 신설(안 제41조의2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행정절차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- 본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상위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, 상위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